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제 3502호

2019. 1. 17. (목)

##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5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5

제4256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8

제425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5

제4258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6

제4259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3

제4260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5

제4261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37

제4262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43

제4263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4

제4264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0

제4265호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 51

제426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8

제4267호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 ..... 59

제4268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5

◆ 고 시

제2019-19호 이문·회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8

제2019-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04

제2019-25호 시민의 숲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6

제2019-26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경미한 변경) .....113

제2019-27호 훈련원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0

제2019-28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7

제2019-2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5. 고급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6.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7. 고급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와 같은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설치·사용시 대체가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 10.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4259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관보” 를 “시보” 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유산, 역사, 건축, 도시계획, 경관, 보존과학,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가진 자
2.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5인” 을 “1명을 포함한 2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1부시장” 을 “행정(1)부시장” 으로,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를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며,” 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2부시장” 을 “행정(2)부시장”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를 “(위원의 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 를 “해촉” 으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체류 및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 연임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사전 부패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문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20명 이내로 변경(안 제6조제1항)
- 나.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제1호)
-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
- 라. 최초로 위촉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 마.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심신장애' 조문 삭제 및 직무상 비위사실, 회피제도 위반의 경우 등을 위원 해촉 사유로 추가(안 제12조)
-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60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평가서초안의)” 을 “(평가서 초안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요약문
- 2. 사업의 개요